

의안번호	2215946
의 퇴 인	박해철의원
회 답 일	2026.6.10.
추 계 번호	26B0231

보호지역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보호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0억 4,000만원, 2032년 1,4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억 6,200만원 (연평균 5,2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190	—	—	—	—	190	38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의 설치 (안 제10조)	14	14	14	14	14	72	14
합계	204	14	14	14	14	262	52

주: 1.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고,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지역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생태적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관련 국토계획·환경계획을 고려한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제1항)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1. 보호지역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목표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역의 지정, 분류, 해제 및 변경에 관한 기준과 관리 원칙 4.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적 연결성 강화 방안 5. 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 평가 체계 및 운영 기준 6. 보호지역 관리 인력 양성,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자원 조달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8. 보호지역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호지역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2	안 제7조 (보호지역의 관리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호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1항)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1. 보호지역의 핵심 가치에 대한 평가 2. 관리 비전 및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의 설정 3. 핵심구역, 완충구역, 이용구역 등 구역의 설정 4. 생물다양성의 위협 요인의 분석 및 대응 방안 5. 보전 및 관리 전략 6.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7.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8. 운영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9.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 결과 반영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9조 (관리 효과성 평가)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호지역의 관리 목표 달성 여부 및 관리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리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효과성 평가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로 정한다.(제3항)	
4	안 제10조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의 설치)	보호지역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제4항)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 국가유산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환경, 생태, 해양, 법률 또는 공간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의무규정
5	안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본계획, 관리계획의 점검결과 및 관리 효과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역 지정, 분류,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호지역 정책 및 계획의 부처 간 조정과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 5. 보호지역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6. 보호지역 관련 재정 배분 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참여 및 공정한 혜택 공유에 관한 사항 8. 보호지역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보호지역의 통합적 관리와 정책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6	안 제14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항)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5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제1항)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전문가·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보호지역 또는 관련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재량규정
8	안 제16조 (사무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둔다.(제1항)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제2항)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9	안 제18조 (생태네트워크의 구축 및 생태적 연결성의 확보 등)	국가는 기존 기반시설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적 연결성 개선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10	안 제20조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지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제1항)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1. 보호지역의 지정, 분류, 해제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 2. 보호지역 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변화에 관한 정보 3.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4. 재정 투입 및 성과 등 재정 현황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정보 및 소관 보호지역 관련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갱신하여야 하며, 정보의 표준화와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제3항) 국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보호지역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21조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제1항)	의무규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제2항)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보호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국제 협력 기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 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 다.(제3항)	재량규정
12	안 제23조 (기금의 운용·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보호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호 지역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제4항)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제 1항)	의무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제4 항)	의무규정
13	안 제24조 (국민 인식 증진 및 교 육)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의 가치와 중요성 및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 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보호지역 및 생물다 양성 보전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 하여 보호지역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제3항)	
14	안 제25조(시민참여 프 로그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민 인식 증진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 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호지역 보전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 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활동을 포함한다.(제2항) 1. 시민과학 프로그램 2. 자원봉사 활동 3. 생태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4. 보호지역 공동 모니터링 5. 지역사회 기반의 보전 활동 및 파트너십 구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15	안 제26조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국가는 보호지역 인근 지역사회가 보전 활동의 실질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제1항) 1. 생태관광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육성 2. 보호지역의 관리 및 모니터링과 관련 지역 일자리 창출 3. 지역 주민 대상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국가는 보호지역과 관련된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항) 국가는 지역 공동체의 보전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공동체가 자긍심을 가지고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16	안 제27조 (조사 및 연구지원)	국가는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조사,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는 과학적 지식과 지역 고유의 생태 관련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주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2항) 1. 생물다양성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측 2.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 및 보호지역의 적응 방안 연구 3. 생태계 복원 기술 및 적용 4. 보호지역 관리기법의 개선 및 개발 5. 보호지역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6. 지역 고유의 생태 관련 경험 및 지식의 조사·발굴 및 활용 방안 연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7조 (보호지역의 관리계획의 수립)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지역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리효과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지정될 보호지역의 규모·유형 및 관리효과성 평가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3	안 제9조 (관리 효과성 평가)		
4	안 제10조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의 설치)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5	안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6	안 제14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보호지역 또는 관련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자료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위원회 운영 및 조사 수행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구성될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종류·규모·구성 및 업무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7	안 제15조 (조사 및 의견청취)		
8	안 제16조 (사무처)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무처 직원의 규모·구성 및 업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9	안 제18조 (생태네트워크의 구축 및 생태적 연결성의 확보 등)	×	·제3호 -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적 연결성 개선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수행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지원의 범위·대상·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해당사항들을 특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개발사업 등으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한 생태통로 설치 사업을 수행 중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87억 7,800만원임
10	안 제20조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	-	·미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 ¹⁾ 에 따라 생태·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 등을 전산화 한 ‘한국보호지역 통합 DB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1	안 제21조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설치)	×	·제3호 - 정부가 보호지역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호지역관리기금 출연의 여부·규모 및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규모·업무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제정안에서는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현시점에서 기금 출연의 여부 및 규모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12	안 제23조 (기금의 운용·관리)		
13	안 제24조 (국민 인식 증진 및 교육)	×	·제3호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지역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14	안 제25조 (시민참여 프로그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시책 및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시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이 확정되니 아니하여 해당 사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15	안 제26조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보전 활동의 주체로서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 지역의 효과적인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조사,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역사회 및 조사, 연구,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내용·대상·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사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16	안 제27조 (조사 및 연구 지원)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보호지역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및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의 위원 참석 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함

- 1)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을 10년마다 마련할 경우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 연구용역 실시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 제8조²⁾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해당 연구용역에는 1억 9,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 2] 유사사례 관련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계약 금액	주요내용
제4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26~2035) 수립 연구	한국 환경 연구원	2025. 4.~ 2026.2.	190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의 추진성과 및 평가 ·국내외 자연환경보전 관련 여건 및 전망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도출 ·제4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과제 도출 ·자연환경정책 전환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해인 2028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10년마다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억 9,000만원(연평균 3,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190	-	-	-	-	190	38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 마련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및 제11조)

-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 수, 참석수당, 개최횟수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본 추계에서는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유사사례인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준용함
 - (위원 수) 제정안에서는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의 정원을 최대 30인으로 규정하면서 국무총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 국가유산청장 등 공무원 6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의

참석 수당 지급대상인 민간위원은 24인으로 가정함

- **(회의개최 횟수)** 회의 개최 횟수는 유사사례인 국립공원위원회의 2025년 회의 개최 횟수를 준용하여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참석수당 30만원³⁾)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가보호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7,200만원(연평균 1,44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국가보호지역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8~2032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24	24	24	24	24	—	—
회의개최 횟수(B, 회)	2	2	2	2	2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14	14	14	14	14	72	14

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고,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3)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